

[서식 예] 답변서(청구이의)

답 변 서

사 건 2000가소000 청구이의

원 고 000

피 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원고는 소외 장○○가 운영한 ○○회사(개인회사)의 명의상 사업주이지만, 실질 상 사업주는 소외 장○○이므로 피고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이행권고결정(확정됨)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이행권고결정등본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이 원고는 위 장○○의 조카로서 ○○회사(개인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고, 모든 자금처리는 원고의 명의로 진행되었으며, 사무실에 나와서 사무를 처리하기도 하였고, 직원들에게 업무적인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 3. 따라서 원고는 명의상으로만 ○○회사의 사업주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진술서(당시 동료 김〇〇)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u> 김</u> 물구소공단
제출법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 , , ,	[25000000 Nave 912	
제출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서의 제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기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결과 의제자백(자백간주)된 피고들과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 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대법원 1980. 9. 26.자용이라403 결정).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진술되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1424 판결).	